

2022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유통 협력 사업 공모 FAQ Ver. 3

2022.03.17.(목) 업데이트
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공연예술 창제작 환경 조성 및 유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'전국 공연예술 창제작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' 사업을 진행합니다. 국공립과 민간, 중앙과 지역 간의 협업을 통해 창제작된 공연을 전국에 선보일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선정, 지원하고자 합니다.

2022년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공모와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해 FAQ로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오니,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FAQ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I. 창제작유통 협력

Q1. 지원 가능한 협업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?

- ① (민간 기획형-공연단체) 민간 공연단체가 국공립 또는 민간 공연단체, 공연장/시설과 창제작 및 유통을 위하여 협업하는 형태 등
- ② (민간 기획형-공연축제) 민간에서 기획·주관하는 공연예술축제 참여 작품들을 타 지역의 공연장/시설에서 기획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는 형태 등
- ③ (민간 기획형-공연시설) 제작역량을 갖춘 민간 공연장/시설이 제작 및 유통하는 형태 등
- ④ (국공립 기획형-공연단체) 국공립 공연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연 레퍼토리 또는 공연권(공연 IP)을 민간 공연단체 및 공연장/시설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여 국공립이 보유한 인적·물적 자원을 협업에 활용하는 형태 등
- ⑤ (국공립 기획형-공연시설) 국공립 공연장/시설에서 장기 레퍼토리를 제작·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공립 또는 민간 공연단체와 협업하는 형태 등

Q2. 민간-민간, 국공립-국공립 간 협업도 지원신청 가능한가요?

- 가능합니다. 다만, 사업의 목적상 민간-국공립 간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.

Q3. 개인 아티스트와 협업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?

→ **가능하지 않습니다.** 공연단체-공연장/시설-기획·제작사 간의 협업만 가능합니다.

Q4. 공연장/시설/재단 등이 소속 상주단체*와 협업하여 진행하는 사업도 신청 가능한가요?

* 상주단체란? 공모 등을 통해서 공연장/시설/재단 등과 상주계약(상주공간 및 연습실 제공 등)을 체결하였으며, 지속적인 공연프로그램을 의무로 제공하는 공연예술단체를 의미합니다.

→ **가능합니다.** 다만, 2022년에 공공지원기관으로부터 창제작/유통 관련 지원금을 받은 작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또한, 서울 외 최소 2개 이상 지역에서 총 2일 2회 공연 개최가 최소 수행해야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.

Q5. 공모 시점 이전에 서울 외 지역의 공연장으로부터 기획초청 공연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지원신청 가능한가요?

→ **가능하지 않습니다.** 단순 기획초청 공연은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. 단순 기획초청을 넘어서 협업기관/단체 간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. 또한, 서울 외 최소 2개 이상 지역에서 총 2일 2회 공연 개최가 최소 수행해야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.

Q6. 지역 공연장을 대관하여 참여해도 지원신청 가능한가요?

→ **가능하지 않습니다.** 단발성 대관 공연이 아닌 창제작 협업 및 유통 계획이 있어야만 지원신청 가능합니다.

Q7. 공연작품의 유통 계획에 서울 공연이 포함되는 경우에, 서울에서 초연 이후 지역에서 공연하는 경우 지원신청 가능한가요?

→ **가능합니다.** 다만, 서울 외 최소 2개 이상 지역에서 총 2일, 2회 이상 공연이라는 최소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서울과 타 지역 공연 개최 순서는 상관없습니다.

Q8. 같은 협업의 내용으로 신청 주체를 바꾸어 중복 지원신청 가능한가요?

→ **가능하지 않습니다.**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신청 주체를 한 곳을 정한 뒤 신청하여야 합니다.

Q9. 본 지원사업 신청서 및 붙임자료 내 직인 날인을 전자 서명 등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?

→ **가능합니다.** 지원신청서 및 붙임자료(확인서,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)에 날인되어야 하는 협업기관/단체의 직인 등은 전자 서명/이미지 등도 가능합니다. 본 자료 제출의 목적은 협업 사업에 대해 협업 기관이 모두 협의하여 확인하고,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함입니다.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력 기관별 개별 날인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도, 본 협업사업에 관한 내용이 모두 확인이 될 수 있는 협약서, 공문,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II. 지원 신청 조건

Q1. 신청 작품은 올해 신규 창제작한 작품만 가능한가요?

→ 2022년 신규 창제작 뿐만 아니라, 기존 창작품을 개선·수정한 경우에도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. 다만, 2개년 협업계획의 경우에는 신규 창제작인 경우에만 지원신청 가능합니다.

* 레플리카, 라이선스 작품의 공연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Q2. 과거에 지자체 또는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제작한 공연작품도 지원 신청 가능한가요?

→ 가능합니다. 다만, 2022년에 공공지원기관으로부터 창제작/유통 관련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Q3. 협업 기관/단체/공연장 중 신청하는 주체의 자격 및 조건은 무엇인가요?

→ 공연 창제작의 기여도가 높은 기관/단체/공연장/시설 등이 신청 주체가 되며, 신청 주체는 지원금 교부신청, 집행, 정산의 의무 및 책임이 있습니다.

Q4. 국공립공연장 및 공연단체, 민간공연장 및 공연단체, 기획·제작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→ 국공립공연장 및 공연단체의 기준은, 중앙정부 소속기관, 지방정부(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 등) 소관기관(사업소), 중앙 및 지방정부 출연 공연예술단체 및 시설 운영단체(재단, 문예회관) 등으로 최근 3년 이내 공연실적이 있어야 합니다.

→ 민간공연장 및 공연단체, 기획·제작사의 기준은, 지원신청 장르에서 전문(직업)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연예술단체, 기획·제작사 및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연장 등으로 최근 3년 이내 공연실적이 있어야 합니다.

Q5. 「공연법」 제9조에 의한 등록공연장에서만 공연 개최 가능한가요?

→ 그렇지 않습니다. 등록공연장 외 야외 공연장/시설 및 복합문화시설 등에서도 공연 개최를 하여도 됩니다. 다만,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공연이 개최되어야 하며, 등록공연장이 아닌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Ⅲ. 2개년 협업계획 지원

Q1. 2개년 협업계획 지원이란 무엇인가요?

→ 신작에 한하여, 협업 공연의 창제작유통 과정을 2개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2022년 연내에 협업 기관 간 공연을 창제작하여 쇼케이스를 개최 지원하고, 이를 평가하여 2023년 완성작 및 유통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.

Q2. 2개년 협업계획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→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여 필수로 선택 및 기재해야 하는 부분을 확인하시어,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- ① 지원신청서 4페이지의 '사업개요>지원유형'에서 '국공립 기획형' 또는 '민간 기획형' 중 하나를 선택하여 v 표기 후, 아래의 '**2개년 협업 계획 지원**'에 반드시 v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.
- ② 지원신청서 11~12페이지의 '**공연 창·제작·유통 계획**'에서 **2022년과 2023년 계획을 반드시 기재**해주시기 바랍니다.
- ③ 지원신청서 13~14페이지의 예산계획에서 **2022년 쇼케이스와 2023년 완성작 및 유통에 대한 자원 조성/지원금 사용계획**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Q3. 2개년 협업계획 지원 절차 및 계획?

→ 2개년 협업계획 지원의 경우, 2022년(1차연도) 쇼케이스 지원금으로 최대 5,000만원, 총 3개 내외의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
2023년(2차연도)에는 1차연도 쇼케이스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된 지원금액에서 1차연도의 쇼케이스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.

Q4. 공모 지원신청 시, 반드시 2023년도 2개 이상 공연장/시설에서 공연할 계획을 확정해야 하나요?

→ **협업 기관은 반드시 결정**되어야 합니다. 2023년도 2개 이상 공연장/시설 또한 확정되어야 하며, 필수자료(대관확인서, 협약서 등을)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Q5. 2022년 연내에 진행하는 쇼케이스 또한 지역 2개 이상의 공연장에서 진행해야 하나요?

→ 그렇지 않습니다. 2개년 협업계획 지원에서 2022년 연내에 진행하는 쇼케이스의 경우에는 서울 또는 지역 한 곳에서 진행하면 됩니다.

IV. 사업예산 계획

Q1. 자부담은 총사업비(지원금과 자부담의 합)의 10% 이상 조성하면 되나요?

→ 네, 그렇습니다. 지원금의 10%가 아닌, 지원금과 자부담금의 합계 금액의 10% 이상을 편성하여야 하며, 재원 조성 비율은 자부담은 협업기관/단체 간 협의하시어 조성하면 됩니다.

예시) 지원금을 3억 신청하였을 때, 자부담은 약 3천 4백만 원으로 조성하여야, 총사업비 3억 3천 4백만 원의 10% 이상이 됩니다.

Q2. 사업 선정 전에 진행된 협업에 대한 예산도 편성 가능한가요?

→ 편성 가능합니다. 다만,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진행된 것만 인정됩니다. 사업 정산 시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Q3. 공연장/시설, 공연단체의 상근 인력의 보수도 예산 편성 가능한가요?

→ 지원금으로는 편성할 수 없으나, 자부담으로는 편성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사업 정산 시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(계약서 등)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Q4. 부가세액의 경우, 지원금으로 편성 가능한가요?

→ 사업자 유형에 따라 편성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. 면세자(고유번호증 소지자, 간이과세자 포함)의 경우 매입부가세액을 보조사업비로 편성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과세자(일반과세자)일 경우에는 매입부가세액을 보조사업비(지원금 및 자부담)로 편성 및 집행이 불가능합니다.

Q5. 본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 된 관람료 수입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?

→ 공연 수입금이 본 사업을 위해 편성한 자부담을 초과할 때는 초과한 금액만큼 반납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본 사업 내에 집행(수입의 재집행)하거나, 연내 해당 작품과 관련된 목적으로 투자(수입의 재투자) 시에는 반납하지 않습니다.